#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2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백혜련·부승찬·박지원

이기헌 • 이재정 • 김영진

김태년 · 백승아 · 염태영

노종면 · 김한규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흐름과 함께 '그린워싱'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음.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 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홍보·포장하는 행위를 뜻함.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의 기업 또는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린워싱 방지를 위 한 제재 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

16조의3).

#### 법률 제 호

신설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3. 제16조의10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기업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①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제16조의10을 위반하여 과징
	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사처
	벌을 받은 경우
<u>3.</u> (생 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